

3. 의견제출

「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(제출의견 보내실 곳)

1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10호

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(우편번호 : 30121)

2) 전화번호 : 044-200-6071, 6074 / 팩스 : 044-866-4395

4. 그 밖의 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(전화 044-200-6071, 6074)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,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www.mof.go.kr : 법령바다-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18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2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SK에너지 주식회사(조경목) ② 주식회사 유신(전경수, 성낙일) ③ 한국석유공업(주)(김병집, 강승모) ④ 인성에이앤티 주식회사(이지익) ⑤ SK이노베이션(주)(김준)

나. 전화번호 : ① 02-2121-6076 ② 02-6202-0114 ③ 02-799-3114 ④ 041-546-2511 ⑤ 042-866-7665

2. 명칭 : 수분저항성을 가지는 중온화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기술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도로 /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

<기술의 요지>

소수성과 친수성으로 양단의 극성이 다른 중합체가 아스팔트/골재 간, 계면 활성화 작용을 유도하여 중온 영역에서 아스팔트의 혼합과 다짐이 가능한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 기술이다. 양극성을 갖는 첨가제가 친수성의 골재를 감싸는 역-미셀 구조를 형성하는 원리에 의한 계면 활성화 기전으로, 점도를 변화시키는 타 기술 대비 수분저항성과 균열 저항성을 크게 개선하고, 습식 공정에 의한 아스팔트 포장의 내구성 향상을 제공한다.

<범위>

양단의 극성이 다른 고분자 중합체가 친수성의 골재 표면을 감싸는 역미셀 구조를 형성, 아스팔트와 골재 간의 계면을 활성화시키고, 일반 고온 아스팔트 대비 30℃ 낮은 중온에서도 다짐 및 혼합성을 제공하면서 수분저항성 및 균열저항성이 개선된 중온 아스팔트 조성물 및 콘크리트 혼합물의 습식공정 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30호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이 '20. 5. 1.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,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(안 제2조, 제3조)

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, 변경사유,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여,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법제화함.